

# 2004 주요업무보고

2004. 9

교 통 지 도 과

## 報 告 順 序

- I .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----- 1
  
- II .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----- 4

##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

(2004. 1. 1 ~ 8. 31)

### 1. 불법 주·정차 지도단속

주·정차 단속	견인건수	비고
113,258	25,756	상습불법 취약지역 집중단속 및 야간단속 실시

### 2. 민원처리 실적(불법 주·정차 및 부정주차)

민원발생건수	인터넷	서면진정	집단	유선	기타
7,451	278	24	3	7,125	21

※ 주차단속요청건수 : 7,271건

### 3. 공영주차장 운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개 소	면 수	세입금액(민간위탁)	공단이양건수	
				개 소	면 수
계	52	2,368	3,991,285	11	563
노 상	34	932	2,730,275	6	178
노 외	18	1,436	1,261,010	5	385

#### 4. 「내집주차장 갖기운동」 사업 추진

(단위 : 가구, 천원)

목 표	예산액	실 적			지원금액
		계	완료	진행	
36	146,500	24	24	0	35,000

#### 5.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

(단위 : 천원/7월말 현재)

구 분	목표(A) (부과계획)	부과(B)	징수(C)	진도(%)	
				(A:B)	(B:C)
계	12,956,000	13,173,000	3,052,000	101	25
현년도	4,567,000	4,673,000	1,273,000	102	27
과년도	8,389,000	8,500,000	1,779,000	101	24

#### 6.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

(단위 : 천원/7월말 현재)

구 분	목표(A) (부과계획)	부과(B)	징수(C)	진도(%)	
				(A:B)	(B:C)
계	1,950,000	2,789,000	661,000	143	24
현년도	600,000	1,214,000	510,000	202	42
과년도	1,350,000	1,575,000	151,000	116	10

### 7. 방치차량 정비

(단위 : 건)

발생건수	자진이동	강제처리	처리중
243	132	83	28

### 8. 버스전용차로 단속

(단위 : 건)

발생건수	과태료부과	경찰서이첩	의견진술 수	진행중
30,386	26,146	422	175	3,643

### 9. 사업용차량 단속

(단위 : 건)

계	지정복 미착용	자격증 미게시	합 승	미터기 미사용	정류장외 정차	정 류 장 질서위반	기타
658	279	3	63	0	10	167	136

### 10. 교통민원신고 처리

(단위 : 건)

신고건수	운전자 과태료	운 수 과징금	경 고	불 문	처분불가
225	56	2	73	42	52

##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1. 불법 주·정차 단속

불법주차 단속 강화

-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·정차 금지 노선
  - 주요간선도로 : 25개 노선
- 화재 등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주차금지 장소
-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이중주차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소
  - 신길5동 시범로 외 28개소

추진계획

(2004. 하반기)

단속원	불법주정차 단속건수	견인건수	비고
16개조 29명	48,000	12,000	

향후대책

- 무인단속시스템 구축
  -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.7.1자로 시행됨에 따라
  -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계획과 병행하여 관내 기 조사된 취약 지역 184개소에 단속시스템 설치
  - 소요예산 : 813,000천원(2005년도 예산 반영)

## 2. 부정 주·정차 단속

### □ 현황

- 주차구획면수: 22개동 8409면
- 단속반 구성
  - 주차관리팀장 외 10명  
( 일반직 2, 기능직 1, 고용직 2, 일용직 6 )
- 거주자 주차 상설 단속반 업무
  - 거주자 주차구획 순찰 및 부정주차 단속

### □ 추진계획

(2004. 하반기)

단속원	부정주정차 단속건수	견인건수	비고
4개조 9명	17,084	2,790	

### □ 향후대책

-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 
배정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

### 3. 과태료 부과징수 계획(하반기)

주정차위반과태료

(단위 : 천원)

구분	부과계획(A)		징수목표(B)		징수목표율(%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(A:B)
계	250,950	10,038,000	57,250	2,290,000	23
현년도 (2004)	101,150	4,046,000	27,300	1,092,000	27
과년도 (2004 이전)	149,800	5,992,000	29,950	1,198,000	20

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

(단위 : 천원)

구분	부과계획(A)		징수목표(B)		징수목표율(%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(A:B)
계	26,000	1,300,000	5,160	258,400	24
현년도 (2004)	8,000	400,000	3,360	168,000	42
과년도 (2004 이전)	18,000	900,000	1,800	90,000	10

징수율 제고

- 월1회 고지서 발급 송달 : 신규 발급 및 체납자
- 체납자에 대해 차량 및 부동산 압류,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제외
- 분기별 : 고액체납자 집중 납부 독려



## 4. 버스전용차로 단속

### □ 버스전용차로 현황(11.14km)

노선명	연 장 (km)	단속지점	근무인원			비고
			계	지도원	공 익	
계	11,140	7	49	10	39	
경 인 로	1,230	1	13	2	11	전일제
시흥대로	870	1	10	2	8	전일제
대 방 로	1,270	1	6	2	4	전일제
용 호 로	1,420	1	5	1	4	시간제
노량진로	920	1	5	1	4	전일제
영등포로	3,480	1	5	1	4	시간제
양 평 로	1,950	1	5	1	4	전일제

### □ 운영 계획

○ 단속인력 : 단속원 49명 (지도원 10명, 공익요원 39명)

○ 단속시간

- 전일제 운영(5개노선)

(경인로, 시흥대로, 대방로, 노량진로, 양평로) : 07:00~21:00

· 토요일 : 1, 3 주는 15:00까지 전용차로제 시행

: 2, 4 주는 전용차로제 미 시행

· 일요일 : 전용차로제 미 시행

- 시간제 운영(2개노선)

(용호로, 영등포로) : 오전 07:00~10:00

오후 17:00~21:00

### □ 단속 방법

○ 1일 2개조 교대로 단속

## 5.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04. 1. 1 ~ 12.31
- 총사업비 : 146,500천원(시비 50%, 구비 50%)
- 사업비 지원방법
  -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액을 공사비 90% 범위내 최고 200만원 까지 지원
  - 설치공사후 전신주·통신주 이설비용을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
  - 화단 등 바닥을 정리 후 내집주차장 설치시 공사비의 90% 범위 내 최고 85만원 까지 지원

### □ 추진계획

- 2004년 목표 : 36가구 (실적 - 24가구 27면)

### □ 기대효과

- 주택가,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기대
- 자기소유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필요성 인식 제고

## 6.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전수점검

### □ 현황

합 계		일 반 주 택		공 동 주 택		일 반 건 축 물		비 고
개 소	대 수	개 소	대 수	개 소	대 수	개 소	대 수	
7,391	87,042	2,385	4,258	517	7,433	4,489	75,351	

### □ 추진계획

- 2004년 점검대상 : 2003년도 사용승인건축물 304개소
  - 점검기간 : 2004.10.1 ~ 2004.10.31(1개월)
    - 1차시정지시 : 2004.11.15 ~ 2004.12.31
    - 2차시정지시 : 2005. 1. 1 ~ 2005.1.31
    - 3차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: 2005.2.1
- 점검 및 조사내용
  -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
  -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 유지관리여부
  - 기계식 주차장치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적정작동 여부
  - 기타 주차장법 위반여부

- 2003.12.31주차장법 제32조 신설로 2004. 7. 1부터 이행강제금 부과
  - 이행강제금 부과금액

위반의 정도	이행강제금	예 시	비 고
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용도로 사용하는경우	주차장설치비용의20%	$m$ 당공시지가200만원일 경우1면당 480만원 [2백만원×12 $m$ (1면)×20%]	위반사항시정시에도 기부과한이행강제금 은징수함
부설주차장본래의 기능을유지하지 아니하는경우	주차장설치비용의10%	$m$ 당공시지가200만원일 경우1면당240만원 [2백만원×12 $m$ (1면)×10%]	